

(參照)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 회 기 : 2000. 7. 5 ~ 7.14(10일간)

구분 일시	개 요		비 고
	본 회 의	위 원 회	
2000년도 7. 5(수) [11:00]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 제84회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조례안등일반의안상정의 건 · 99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 결산승인안상정의 건 ·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사회 : 의사담당 장소) 본회의장
7. 6(목) [10:00] [11:00]	휴 회	○ 의회운영위원회운영 · 99회계년도성남시세입. 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 ○ 각 상임위원회 운영 · 조례안등일반의안 심사	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7. 7(금) [10:00]	○ 제2차 본회의 · 시정에 관한 질문		장소)본회의장
7. 8(토) [10:00]	○ 제3차 본회의 · 시정에 관한 질문		장소)본회의장

구분 일시	개 요		비 고
	본 회 의	위 원 회	
7. 9(일)	휴회(일요일)		
7. 10(월) [10:00]	휴 회	○ 각 상임위원회 운영 · 99회계년도성남시세입. 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	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7. 11(화) [10:00]	휴 회	○ 각 상임위원회 운영 · 99회계년도성남시세입. 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	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7. 12(수) [10:00]	휴 회	○ 각 상임위원회 운영 · 99회계년도성남시세입. 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	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7. 13(목) [10:00]	휴 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 99회계년도성남시세입. 세출결산승인안 종합 심사	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7. 14(금) [11:00]	○ 제4차 본회의 ·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 99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장소)본회의장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내역

연 번	안 건 명	소관부서	소관 위원회
1	○ '99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회 계 과	각상임위원회
2	○ 성남시제중명동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 생 과	행정경제
3	○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도 시 과	도시건설
4	○ 사기막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	도 시 과	“
5	○ 보통골주거환경개선지구에대한청원	도 시 과	“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 원 회																				
1	'99회계년도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제안이유 · '99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세입·세출 예산집행 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재산 정리하여 결산서를 작성, 그 결과를 자체 분석하고 · 시의회에서 선임한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친 후 결산검사위원회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련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코자 함 ☐ 주요골자 (단위 :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예 산 액</th><th>세입결산액</th><th>세출결산액</th><th>세제잉여금</th></tr> </thead> <tbody> <tr> <td>계</td><td>713,163,411,000</td><td>823,573,623,560</td><td>511,800,265,280</td><td>317,773,358,280</td></tr> <tr> <td>일반회계</td><td>502,558,925,000</td><td>600,260,510,160</td><td>411,529,578,710</td><td>188,730,931,450</td></tr> <tr> <td>특별회계</td><td>210,610,486,000</td><td>223,313,113,400</td><td>100,270,686,570</td><td>129,042,426,830</td></tr> </tbody> </table>	구 분	예 산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제잉여금	계	713,163,411,000	823,573,623,560	511,800,265,280	317,773,358,280	일반회계	502,558,925,000	600,260,510,160	411,529,578,710	188,730,931,450	특별회계	210,610,486,000	223,313,113,400	100,270,686,570	129,042,426,830	회 계 과	각상임위원회
구 분	예 산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제잉여금																				
계	713,163,411,000	823,573,623,560	511,800,265,280	317,773,358,280																				
일반회계	502,558,925,000	600,260,510,160	411,529,578,710	188,730,931,450																				
특별회계	210,610,486,000	223,313,113,400	100,270,686,570	129,042,426,830																				
2	성남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종전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의 위임 사항으로 이·미용사 면허및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율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그 근거규정인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되면서 이·미용사 면허 및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위 생 과	행정경제위원회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 원 회
3	성남시도시계획 조례안	□ 주요골자 ·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율표중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가 없는 이·미용사 면허 및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 규정 삭제 □ 제안이유 도시계획법령이 전면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내용을 우리시의 특성에 부합되게 정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디자인도시 성남의 도시 성장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청회 개최전에 자문을 받도록 함(안 제4조) ·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행정구역을 중심으로한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 5조) ·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 및 사유를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알림으로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안 제8조) · 10년 이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도 시 과	도시건설 위원회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자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함(안 제12조) ·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상세계획구역 및 도시설계구역을 지구단위구역으로 통합한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운용지침 작성근거 마련(안 제16조) · 건폐율은 제1,2종 전용주거지역 50%, 제1,2종 일반주거지역 60%, 준주거지역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중심상업지역 80%, 일반 · 근린상업지역 70%, 유통상업지역 60%, 전용 · 일반 · 준공업지역 70%, 보전 · 자연 · 생산 녹지지역 20%이하로 규정함(안 제32조) · 용적율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300%, 중심상업지역 1,000%, 일반상업지역 800%, 근린상업지역 600%, 유통 상업지역 600%, 전용공업지역 300%, 일반공업 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 생산녹지지역 50%, 자연녹지지역 80%, 보존녹지지역 50% 이하로 규정함(안 제33조) · 보존녹지지역내에서는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은 농 · 축 임업에 종사하는자에 한한다로 규정(안 제31조)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 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공동주택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연구소·연구원안에서만 가능하고 취락지구 및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규정함(안 제31조 별표16) ·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에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중 매수불가 토지안에서의 건축물등의 허용범위는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3층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로서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25제곱미터에 한한다.(안 제13조) ·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토지의형질 변경행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 및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성남시도시계획조례로 통합함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4	사기막골 주거 환경개선지구 에 대한 청원	○ 청원인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76-1 정우근 ○ 소개의원 : 방익환의원 ○ 청원요지 사기막골 주거환경개선지구 중원구 상대원1동 75·76-2·77번지 3필지 토지에 20여년전부터 건축물이 기설치되어 있음에도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동 건물의 절반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잔여 토지에 대한 이용가치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위의 잔여 토지분에 대하여 활용 할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포함 시켜 줄 것을 청원 함	도시과	도시건설위원회
5	보통골 주거환경 개선지구 에 대한 청원	○ 청원인 : 중원구 상대원1동 1442 방두영 ○ 소개의원 : 방익환의원 ○ 청원요지 보통골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중원구 상대원동 378-3번지의 토지상에 20여년전부터 건축물이 기설치되어 있음에도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니 상대원동 378-3번지를 활용 할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포함 시켜 줄 것을 청원 함	도시과	"